

● 국토교통부공고 제2022-호

지적업무처리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4월 28일

국토교통부장관

지적업무처리규정 일부개정령(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2필지 이상의 토지를 합병하려는 경우 토지소유자의 주소가 서로 다르면 합병을 제한하던 것을 합병이 가능하도록 시행령을 개정함에 따라 세부적인 업무처리 방법을 하위규정에 마련할 필요

2. 주요내용

합병하려는 토지의 어느 하나에 등록번호가 기재되지 않은 경우에는 등록번호를 기재한 후 합병신청 하도록 하고, 합병하려는 토지의 주소가 서로 다른 경우(성명과 등록번호는 같은 경우)로서 등록번호 확인 등을 통하여 동일인임을 확인한 경우에는 합병 모번지(합병하여 지적공부에 등록되는 지번)에 기재된 주소로 합병처리 할 수 있도록 처리절차를 명확히 함

3. 의견 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2년 5월 16일까지 국토교통부장관(참조 : 공간정보제도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개 정(안)	수 정(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전자공청회

- 1) 전자우편(이메일) : wisdomlee@korea.kr
- 2)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 3) 팩스 : 044-201-5542
- 4) 전자공청회 : 국민신문고(<http://www.epople.go.kr>)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공간정보제도과(전화 : (044) 201 - 3481)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행정예고와 관련된 개정안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